

보충서면

사건 2025카합50253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조태욱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보충합니다.

1.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가. 채무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는 심문종결 이후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추가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결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전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신청기초의 동일성을 벗어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1) 채무자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합니다(소갑 제15호증 채무자 정관 제42조 제1항).

채무자 정관 (소갑 제15호증)

제42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회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이사후보군 발굴·구성 및 육성
2.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2) 조승아는 사회이사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사회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2025. 11. 21.자(대표이사후보 33명을 16명으로 압축), 2025. 12. 2.자(16명에서 7명으로 압축), 2025. 12. 9.자(7명에서 3명으로 압축)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했습니다(소갑 제11호증의 1, 2, 3 각 채무자 보도자료, 소갑 제12호증 더팩트 기사, 소갑 제13호증 중앙일보 기사).

(3) 조승아가 참여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따라 최종후보자 3인이 선출되었고, 채무자 이사회는 2025. 12. 16. 최종 후보 3인 중 박윤영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소갑 제10호증 조선비즈 기사).

(4) 이처럼 2025. 12. 16.자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조승아가 참여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습니다. ▲ 양자 모두 채무자 대표이사후보 선출을 위한 것이고(목적의 동일성), ▲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가 없다면 애초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과정과 절차의 연속성).

(5)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신청취지 변경과 상관 없이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의 하자는 당연히 그 후속조치인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승계됩니다. 대표이사 후보 33명을 16명, 7명, 3명으로 순차적으로 압축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위와 같이 압축된 3명의 후보자만 대상으로 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당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장대로 별도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경제 및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을 둘러싼 혼란과 경영 공백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 소 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대표 이사 후보 선정이라는 최종 목적을 공유하는 연속된 절차로서 신청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정관 제42조 제1항 위반

(1)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합니다(소감 제15호증 채무자 정관 제42조 제1항).

채무자 정관 (소갑 제15호증)

제42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이사후보군 발굴·구성 및 육성
2.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2) 정관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전원’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칙이자 적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외이사는 즉시 교체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사를 교체하지 않은 채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정관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원칙,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3) 따라서 조승아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무자격자 조승아를 배제하고 새로 사외이사를 선출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 적법한 사외이사 교체 없이 무자격자 조승아가 참여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정관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무효이고, ② 그 하자는 2025. 12. 16.자 최종 대표이사후보 선정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사회 결의 역시 위법·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채무자 회사 최고규범인 정관을 위반한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위반

(1) 채무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결격사유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만으로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2)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회 혹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하자가 이사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조승아는 사외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 선정을 주도했습니다. ▲ 채무자 정관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점, ▲ 그럼에도 자격 없는 조승아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 ▲ 무자격자 조승아가 압축한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최종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승아가 참여한 하자는 이사회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위반

(1) 채무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성별이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장회사 특례 규제로 일종의 행정법규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2)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결정 등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등 참조).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참조).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종종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의 검토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된 이사회 구성과 결의는 위법·무효입니다.

첫째,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기초한 강행규정입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위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둘째, 실제로 대법원은 일관되게, 예외없이 남녀평등에 관한 법규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6조는 물론, 심지어 종중 구성원 자격에 관해서도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은 일관되게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위 대법원 92누1576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0011 판결 참조).

셋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경제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입법 목적의 강행성). 그간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기구가 한쪽 성, 남성으로만 구성된 것은 헌법상 평등권,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고용에서는 남녀평등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인데(남녀평등고용법, 근로기준법 제6조), 정작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서 남녀차별을 방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신설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금지시킨 것입니다(소감 제16호증 자본시장법 개정 이유). 이처럼 경제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유 (소감 제16호증)

【제정·개정 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만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넷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문리해석 원칙 : 금지규정의 강행성). 단순히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명시적 문언과 취지, 금지규정의 강행성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행규정임이 명백합니다.

다섯째, 조문 형식과 구조,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행규정임이 명백합니다
(체계적 해석 원칙 : 조문 체계와 구조, 위치에 따른 강행성).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중 하나입니다. 같은 장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제165조의3), 합병 등의 특례(제165조의4),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165조의5),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조의6),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조의7), 액면미달발행의 특례(제165조의8)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특례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발행 및 배정이 위법·무효라는 점은 특별히 이론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자본시장법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동등하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내지 165조의19 특례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만 훈시규정이라는 것은 법령의 체계적 해석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조문 체계와 구조, 체계적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합니다.

라. 소 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는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42조 제1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위반되어 위법·무효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존재

가. 채무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가치분 단계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의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투어볼 기회조차 없이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승아의 결격사유가 적법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법적 안정성에도 심히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채무자 주장의 부당성

그러나 채무자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합니다.

첫째, 채무자 주장은 그 자체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존재이유, 그간 수없이 쌓인 법원 결정례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기 위해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수 많은 법원의 인용 결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무조건 본안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채무자 주장은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간 두텁게 쌓인 법원의 인용 결정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승소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조승아가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사실, 그럼에도 조승아가 자격 없이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의가 채무자 정관 제42조 제1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위반된다는 점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위반 법규 측면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채무지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셋째, 경영 공백 방지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 사건 가처분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격 없는 조승아를 배제하고, 새로 사외이사를 선출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적법하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 그 위원회가 적법하게 후보자들을 압축하고, → 이사회가 적법하게 압축된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최종 대표이사후보자를 결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본안소송에서 장기간의 소송 끝에 이사회결의가 위법·무효로 결론이 날 경우, 선출된 대표이사의 자격과 업무처리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법적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논쟁이 아니라, 적법하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적법하게 대표이사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넷째, 채무자는 조승아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했습니다. 조승아는 2024. 3. 26. 현대제철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한달 전인 2024. 2. 26. 현대제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소감 제17호증 현대제철 주주총회 소집공고). 조승아는 채무자 이사회에 겸직 예정 사실을 보고했고, 채무자 이사회는 2024. 3. 7. 조승아 본인은 이해당사자로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승아의 현대제철 사외이사

겸직을 승인했습니다(소갑 제18호증 이사회 주요활동).

이사회 주요활동 (소갑 제18호증)			
이사의 타회사 이사 겸임 승인의 건	원안가결	7/7*	
제4차 2024.3.28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위원회 구성(안)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위원회 구성 의 결	8/8
* 조승아 이사 참여불가			

따라서 채무자 이사회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2024. 3. 7. 겸직 승인 무렵 조승아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2024. 3. 20. KT주식 약 280만 주를 매각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2024. 4. 2. 현대차가 채무자 최대주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소갑 제19호증 대한경제 기사).

또한 정부 심사를 거쳐 2024. 9. 19. 현대차그룹이 채무자의 최대 주주로 변경되는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공지된 사실이었습니다 (소갑 제20호증 경향신문 기사, 소갑 제21호증 SBS Biz 기사).

2024. 9. 19.자 경향신문 기사 (소갑 제20호증)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처럼 채무자는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달 전인 2024. 9. 19.경에는 현대차그룹이 채무자의 최대주주로 변경된
사실, 조승아가 현대차그룹의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에 결격사유가 있는 조승아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채무자의 악의, 중과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무자 정관 제42조 제1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위법·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채무자의 적법 경영과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 차기 대표이사 선정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래야만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적법한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갑 제16호증	자본시장법 개정 이유
1. 소갑 제17호증	현대제철 주주총회 소집공고
1. 소갑 제18호증	이사회 주요활동
1. 소갑 제19호증	대한경제 기사
1. 소갑 제20호증	경향신문 기사
1. 소갑 제21호증	SBS Biz 뉴스 기사

2026. 2. 3.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현

담당변호사 신 인 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귀중